

#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

의안  
번호 : 36

제출일자 : 2003.

제출자 : 달성



## 제정 이유

지역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의 설립및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근거법령

지방자치법 제15조

## 주요골자

- 가.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증진과 여성단체활동 지원, 여성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등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함. (안제3조)
- 나. 민법의 규정에 의한 『재단법인』을 설립 위탁운영함. (안제4조)
- 다. 법인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함. (안제5조)
- 라. 법인에는 법인이사회와 별도의 사무직원을 두며, 이사의 선임 등은 정관으로 정함. (안제6조)
- 마.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따로 정함. (안제6조)
- 바. 법인은 설립목적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음. (안제10조)
- 사. 법인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무상임대 및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. (안제11조)
- 아. 법인은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. (안제13조)
- 자. 군수는 법인을 감독하며, 필요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. (안제14조, 안제15조)

## 제정조례안 : 붙임

## 대구광역시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역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(이하 “여성복지센터”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과 위치)** 여성복지센터의 명칭은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라 칭하고, 그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3-41번지에 둔다.

**제3조(업무와 기능)** 여성복지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.

1. 여성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
2.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
3.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여성자원봉사자 육성관리
4.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
5. 기타 여성복지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4조(운영)** 여성복지센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를 설립하여 위탁운영한다

**제5조(법인설립)**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.

②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6조(법인이사회 등)** ①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라 한다)와 별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및 사무직원의 운영과 보수 등은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고 한다)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

**제7조(이사의 선임 및 임원 등의 임면)** 법인 이사의 자격기준, 추천방법, 절차 및 임원 등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

**제8조(운영규정)** 법인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한다.

**제9조(재산의 조성)**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여성복지센터의 운영 수익금
3. 기타 수익금 등

**제10조(수익사업과 사용료 징수)** ①법인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여성복지센터 사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하며, 사용료는 【별표】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한다. 다만, 여성복지센터의 장(이하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시설과 운영지원)** ①여성복지센터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②군수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**제12조(재산운영 및 관리)** ①센터장은 법인에서 관리·운영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②법인의 재산은 설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법인예산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달성군 관련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사업계획 및 결산)**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지도·감독)** ①군수는 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.

②군수는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관계서류, 장부,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해 보고를 하게 하고, 소속공무원으로

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**제15조(공무원의 파견)** 군수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**제16조(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】

## 1) 시설사용료

구 분	기 준	사 용 료	비 고
헬스장	1인/1월	50,000원	
강 당	오 전	30,000원	
	오 후	50,000원	
	야 간	70,000원	
회의실 및 강의실	1회(2시간)	10,000원	

## 2) 부속설비

구 분	기 준	사 용 료	비 고
피아노	1회	30,000원	
Beam Project	1회	20,000원	
조 명	1회	25,000원	
냉·난방기	1회	80,000원	

※주 1)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1회로 본다.

## 2) 사용시간 구분

가) 오전 : 09:00~12:00

나) 오후 : 12:00~18:00

다) 야간 : 18:00~22:00

라) 1일 : 09:00~22:00

3) 토요일 오후, 일요일,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30%를 가산함.

4)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,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%로 함.

5) 초과시 사용료 가산 :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20%를 가산함.